오산시의회 공고 제2020-18호

오산시의회 자치법규안 예고

「오산시의회 의회기 및 의원배지에 관한 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주요 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지방자치법 제66조의2 및 오산시의회 회의 규칙 제19조의2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2020년 8월 21일

오산시의회의장

오산시의회 의회기 및 의원배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장인수 의원 대표발의)

1. 제안이유

○ 의회기의 게양 방법 중 의회기를 국기와 같이 게양할 때에는 국기의 왼편에 게양하도록 한 규정은 현행 「대한민국국기법」에 맞지 않기에 이를 삭제하고 「대한민국국기법」에 따르도록 하고자 함.

2. 주요골자

가. 의회기를 국기와 같이 게양할 때에는 국기의 왼편에 게양하도록 한 규정을 삭제함(안 제3조제2항).

※ 의회기를 국기와 같이 게양할 때에는 「대한민국국기법」에 따르도록 제3조제4항에서 정하고 있음.

3. 규칙안 : 붙임

4. 의견제출

○ 제출기일 : 2020년 8월 28일까지

○ 제출방법 : 서면, 우편, 오산시의회홈페이지 등

○ 기재내용 : 주소, 성명, 연락전화번호, 의견

○ 제출기관 : 오산시의회(전문위원실)

· 우편번호 : 447-701

· 주　　소 : 오산시 성호대로 141(오산동, 오산시의회)

· 전　　화 : 031)8036-8023,　· 팩　　스 : 031)375-2875

· 전자메일 : pk1121@korea.kr

오산시의회 자치법규안 예고에 대한 의견서

□ **자치법규명 : 오산시의회 의회기 및 의원배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 **의견제출자**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전 화 번 호 :

규칙안 내용	찬 성 여 부		의　　견	비 고
	찬성	반대		

오산시의회 의회기 및 의원배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장인수 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제8-356호

발의년월일 : 2020년 8월 21일

발 의 의 원 : 장인수, 김영희, 김명철, 이상복, 성길용, 이성혁, 한은경 의원

□ 제안이유

○ 의회기의 게양 방법 중 의회기를 국기와 같이 게양할 때에는 국기의 왼편에 게양하도록 한 규정은 현행 「대한민국국기법」에 맞지 않기에 이를 삭제하고 「대한민국국기법」에 따르도록 하고자 함.

□ 주요골자

가. 의회기를 국기와 같이 게양할 때에는 국기의 왼편에 게양하도록 한 규정을 삭제함(안 제3조제2항).

※ 의회기를 국기와 같이 게양할 때에는 「대한민국국기법」에 따르도록 제3조제4항에서 정하고 있음.

□ 참고사항

○ 관계법령발췌서 : 별첨1

- 「대한민국국기법」 제9조제2항
- 「대한민국국기법 시행령」 제15조제1항, 별표5, 별표5의2

○ 「오산시의회 의회기 및 의원배지에 관한 규칙」 : 별첨2

오산시의회규칙 제 호

오산시의회 의회기 및 의원배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오산시의회 의회기 및 의원배지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을 삭제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조(의회기의 게양) ① (생 략)	제3조(의회기의 게양) ① (현행과 같음)
② 의회기를 국기와 같이 게양할 때에는 국기의 왼편에 게양한다.	<삭 제>
③·④ (생 략)	③·④ (현행과 같음)

【별첨1】

관계법령 발췌서

【대한민국국기법】

제9조(국기의 게양방법 등) ② 국기의 게양 및 강하 방법, 국기와 다른 기의 게양 및 강하 방법, 국기의 게양위치, 게양식·강하식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대한민국국기법 시행령】

제15조(국기와 다른 기의 게양 및 강하 방법) ① 국기와 다른 기를 같이 게양할 때에는 별표 5에 따라 국기를 가장 높은 깃대에 게양한다. 다만, 2개 이상의 게양대 높이가 동일할 때에는, 별표 5-2에 따라 게양하는 기의 수가 홀수인 경우에는 국기를 중앙에, 그 수가 짝수인 경우에는 앞에서 바라보아 왼쪽 첫 번째에 게양한다.

[별표 5] <신설 2008.7.17>

국기와 다른 기의 게양방법(국기게양대를 높게 설치한 때)(제15조 제1항 본문 관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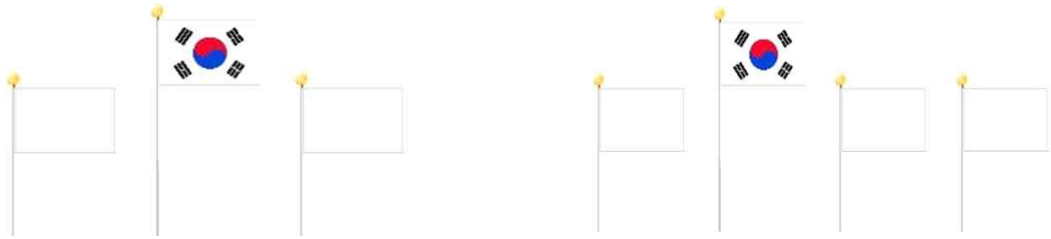

(게양대가 3개인 경우) (게양대가 4개인 경우)

[별표 5의2] <개정 2008.7.17>

국기와 다른 기의 게양방법(게양대의 높이가 동일한 경우)(제15조 제1항 단서 관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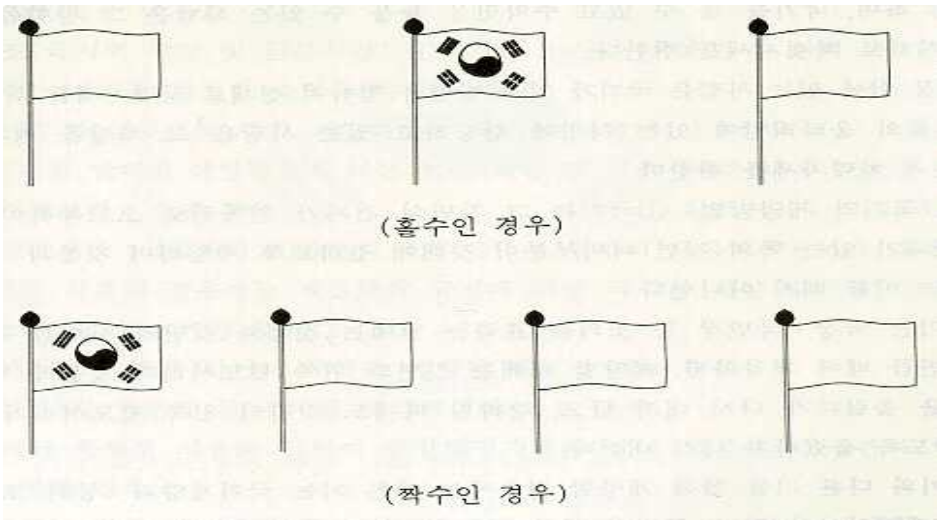

【별첨2】

현 행 규 칙

오산시의회 의회기 및 의원배지에 관한 규칙

제정 2002년 4월 18일 의회규칙 제2호
일부개정 2014년 9월 5일 의회규칙 제2014-12호
(제명개정)
일부개정 2015년 1월 30일 의회규칙 제14호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오산시의회를 상징하는 의회기에 관한 사항과 오산시의회 의원배지의 모형 및 규격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의회기의 규격 등) ① 오산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의회기(이하 “의회기”라 한다)의 모형 및 규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깃면의 가로와 세로의 규격은 3과 2의 비례로 하되, 표준규격은 다음 각 목과 같다.
   가. 옥외게양용 : 가로 210센티미터, 세로 140센티미터
   나. 옥내게양용 : 가로 130센티미터, 세로 90센티미터
2. 깃면은 중앙에 무궁화 모형, 무궁화내에 테두리원, 원속에 “의회”자를 표시하고, 깃면 하단에 “오산시의회”자를 표시한다.
3. 깃면의 색상은 자주색, 무궁화 모형내의 원형의 바탕은 백색으로 하며, 무궁화모형과 원형내의 “의회”자는 금색으로 “오산시의회”자는 백색으로 한다.
4. 모형 및 규격은 별표 1과 같다.

② 실내에 게양하는 의회기에는 금실로 장식할 수 있으며, 금실은 깃대와 접하지 않는 깃면의 둘레에 부착하되, 폭을 깃면 세로의 8분의 1로 한다.

③ 깃봉은 국기봉으로 한다.

제3조(의회기의 게양) ①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옥외용 의회기는 의회건물에 게양하고, 실내용 의회기는 의회 본회의장, 의장집무실에 게양한다.

② 의회기를 국기와 같이 게양할 때에는 국기의 왼편에 게양한다.

③ 의회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사무과장이 지정하는 장소에 국기와 함께 게양할 수 있다. 이 경우 제3호부터 제5호까지는 조기를 게양한다.

1. 국경일
2. 1월 1일
3. 현충일

4. 국장기간
5. 국민장일
6. 의회의 회기 중인 경우
7. 그 밖의 공휴일 외의 평일은 사무과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④ 국기와 의회기를 함께 게양할 때의 게양방법은 「대한민국국기법」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제4조(의회기의 관리) 의회기의 관리는 국기의 관리방법을 준용한다.

제5조(의회기에 대한 예의) 의회기에 대한 예의는 주목만으로 한다.

제6조(의원배지의 규격 등) ① 의회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배지(이하 “의원배지”라 한다)의 모형 및 규격 등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모형은 5지의 무궁화 모형으로 하고, 무궁화 모형안에 원을 그려 “의회”자를 표시한다.
2. 무궁화 모형의 색상과 “의회”자는 금색으로 하고 내부 원의 바탕은 백색으로 한다.
3. 모형과 규격은 별표 2와 같다.

② 재료는 “순은”으로 하되, “금색”은 “순금”으로 도금하고 “백색”은 “백색칠보”를 입힌다.

제7조(의원배지의 교부등) ① 의원배지는 의원 등록과 동시에 교부한다.

② 의원배지는 타인에게 양도 또는 대여하지 못하며, 분실 또는 훼손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을 별지 제1호서식에 의거 신고서를 제출하여 재교부 받아야 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재교부 받을 경우 그 제작비용은 의원 본인이 부담하여야 한다.

제8조(의원배지의 패용) 의원배지는 상의 좌측 옷깃에 패용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4. 9. 5 의회규칙 제2014-12호〉

이 규칙은 의회가 의결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5. 1. 30 의회규칙 제14호〉

이 규칙은 의회가 의결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 및 제6조의 개정규정은 201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1】, 【별표 2】, 【 별지 제1호서식】 : 생략